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로 규정하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실장·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상향하며, 지하 안전 관리 등 3개 분야 평가대상 정원의 평가기간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0. 12. 00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,

인력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과 전일제공무원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고, 철도경찰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2명(철도경찰주사보 2명) 중 1명의 직급을 조정(철도경찰주사 1명, 철도경찰주사 1명)하며,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일반임기제 공무원 정원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정책기획관”을 “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9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과 비상안전기획관으로 하며, 정책기획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,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및 제14항을 각각 제5항부터 제14항까지 및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정책기획관은 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9조제3항제13호부터 제16호까지, 제16호의2, 제16호의3,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및 제34호부터 제3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.

제5조제4항(중전의 제14항)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.

1. 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9조제3항제39호부터 제43호까지의 사항

제7조제2항 중 “국토정책관·도시정책관 및 건축정책관은”을 “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토도시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국토정책관, 도시정책관 및 건축정책관으로 하며,”로 하

고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1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21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국토정책관은 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, 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, 제6호부터 제11호까지, 제13호부터 제19호까지, 제19호의2부터 제19호의4까지, 제20호부터 제28호까지 및 제35호의2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.

④ 도시정책관은 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1조제3항제29호부터 제35호까지, 제35호의3 및 제36호부터 제4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.

⑤ 건축정책관은 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1조제3항제45호부터 제51호까지 및 제53호부터 제5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주택정책관·주거복지정책관·토지정책관 및 국토정보정책관은”을 “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택토지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주택정책관·주거복지정책관·토지정책관 및 국토정보정책관으로 하며,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부터 제20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23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주택정책관은 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.

④ 주거복지정책관은 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2조제3항제21호부터 제3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.

⑤ 토지정책관은 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2조제3항제3호부터 제5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.

⑥ 국토정보정책관은 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2조제3항제60호부터 제7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건설정책국장 및 기술안전정책관”을 “건설정책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3조제1항에 따라 건설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기술안전정책관으로 하며,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,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.

③ 기술안전정책관은 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3조제3항제21호부터 제34호까지, 제36호 및 제37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종합교통정책관·물류정책관 및 자동차관리관은”을 “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통물류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종합교통정책관·물류정책관 및 자동차정책관으로 하며,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7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

설한다.

③ 종합교통정책관은 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5조제3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, 제15호의2, 제16호부터 제21호까지 및 제37호부터 제4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.

④ 물류정책관은 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5조제3항제2호부터 제3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.

⑤ 자동차정책관은 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5조제3항제43호부터 제5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항공정책관·항공안전정책관 및 공항항행정책관은”을 “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6조제1항에 따라 항공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항공정책관·항공안전정책관 및 공항정책관으로 하며,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7항까지를 각각 제12항부터 제19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항공정책관은 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6조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, 제14호의2, 제14호의3, 제15호부터 제20호까지 및 제20호의2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.

④ 항공안전정책관은 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6조제3항제21호부터 제4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.

⑤ 공항정책관은 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6조제3항제4

7호부터 제6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철도국장 및 철도안전정책관”을 “철도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8조제1항에 따라 철도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철도안전정책관으로 하며,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,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.

③ 철도안전정책관은 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8조제3항제12호, 제13호, 제17호, 제20호 및 제22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.

제56조제1항 단서 중 “5퍼센트”를 “7퍼센트”로 한다.

제57조제2항 단서 및 제4항 단서 중 “5퍼센트”를 각각 “7퍼센트”로, 같은 항 단서 중 “(철도경찰주사보 2명)”을 “(철도경찰주사 1명 및 철도경찰주사보 1명)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“5퍼센트”를 “7퍼센트”로 한다.

제58조제1항 중 “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(이하 “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”이라 한다) 정원은 별표 7 제2호, 별표 7의2 제2호, 별표 9 제2호, 별표 9의2 제2호, 별표 12 제2호 및 별표 12의2 제2호와 같다”를 “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”로 하

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7조에 따른 정원 배정 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한다.

별표 7 “1. 공무원(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) 계 991”을 삭제하고, 일반직 계 “981”을 “983”으로 하며, 행정서기보 “1”을 “3”으로 하고, “2.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2.0”를 삭제하며, “일반직 계 2.0”를 삭제하고, “행정서기보 2.0”를 삭제한다.

별표 7의2 “1. 공무원(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) 계 994”를 삭제하고, 일반직 계 “984”를 “986”으로 하며, 행정서기보 “1”을 “3”으로 하고, “2.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2.0”를 삭제하며, “일반직 계 2.0”를 삭제하고, “행정서기보 2.0”를 삭제한다.

별표 9 “1. 공무원(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) 계 1,487”을 삭제하고, 일반직 계 “1,487”을 “1,493”으로 하며, 행정서기보 “40”을 “43”으로 하고, 공업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“162”를 “165”로 하며, “2.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6.0”를 삭제하고, “일반직 계 6.0”를 삭제하며, “행정서기보 3.0”를 삭제하고, “공업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3.0”를 삭제한다.

별표 9의2 “1. 공무원(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) 계 1,487”을 삭제하고, 일반직 계 “1,487”을 “1,493”으로 하며, 행정서기보 “40”을 “43”으로 하고, 공업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“162”를 “165”로 하며, “2.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6.0”를 삭제하고, “일반직 계 6.0”를 삭제하며, “행

정서기보 3.0”를 삭제하고, “공업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3.0”를 삭제한다.

별표 12 “1. 공무원(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) 계 614”를 삭제하고, 일반직 계 “614”를 “615”로 하며, 행정서기보 “1”을 “2”로 하고, “2.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1.0”를 삭제하며, “일반직 계 1.0”를 삭제하고, “행정서기보 1.0”를 삭제한다.

별표 12의2 “1. 공무원(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) 계 614”를 삭제하고, 일반직 계 “614”를 “615”로 하며, 행정서기보 “1”을 “2”로 하고, “2.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1.0”를 삭제하며, “일반직 계 1.0”를 삭제하고, “행정서기보 1.0”를 삭제한다.

별표 19 제1호나목 지하 안전 관리의 평가기간란, 같은 표 제2호 업무 1)의 평가기간란, 같은 호 업무 2)의 평가기간란 및 같은 호 업무 3)의 평가기간란 중 “2020년 12월 31일”을 각각 “2021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기획조정실장) ① (생 략)	제5조(기획조정실장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 하되,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 등급으로 하고, 비상안전기획관 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 제공무원으로 보하되, 그 직위 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 다. <신 설>	② 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9조제1항에 따라 기획 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과 비상안전기획관 으로 하며, 정책기획관----- ----- ----- --.
③ ~ ⑧ (생 략)	③ 정책기획관은 「국토교통부 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9조제 3항제13호부터 제16호까지, 제1 6호의2, 제16호의3,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및 제34호부터 제38 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 정실장을 보좌한다.
⑩ ~ ⑬ (생 략)	⑤ ~ ⑩ (현행 제3항부터 제8 항까지와 같음)
⑭ 비상안전기획관은 다음 사항 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 한다.	⑪ ~ ⑭ (현행 제10항부터 제1 3항까지와 같음)
	④ ----- ----- ---

<u>1.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·종합 및 조정</u> <u>2. 정부 비상대비훈련계획의 수립 및 실시</u> <u>3.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국가중요시설 방호에 관한 사항</u> <u>4.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</u> <u>5. 국토교통 부문 안전정책의 총괄·조정</u> <u>6. ~ 10. (생략)</u> 제7조(국토도시실) ① (생략) ② <u>국토정책관·도시정책관 및 건축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,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.</u> <u><신설></u>	<u>1. 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9조제3항제39호부터 제43호까지의 사항</u> <u><삭제></u> <u><삭제></u> <u><삭제></u> <u><삭제></u> <u>2. ~ 6. (현행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)</u> 제7조(국토도시실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토도시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국토정책관, 도시정책관 및 건축정책관으로 하며, -----</u> <u>③ 국토정책관은 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, 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, 제6호부터 제11호까지, 제13호부터</u>
--	---

<신 설>

<신 설>

③ ~ ⑱ (생 략)

제8조(주택토지실) ① (생 략)

② 주택정책관·주거복지정책관·토지정책관 및 국토정보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,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.

제19호까지, 제19호의2부터 제19호의4까지, 제20호부터 제28호까지 및 제35호의2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.

④ 도시정책관은 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1조 제3항제29호부터 제35호까지, 제35호의3 및 제36호부터 제4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.

⑤ 건축정책관은 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1조 제3항제45호부터 제51호까지 및 제53호부터 제5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.

⑥ ~ ㉑ (현행 제3항부터 제18항까지와 같음)

제8조(주택토지실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택토지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주택정책관·주거복지정책관·토지정책관 및 국토정보정책관으로 하며, -----

ㄴ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③ ~ ⑳ (생 략)

제9조(건설정책국) ① 건설정책국
장 및 기술안전정책관은 고위공
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
으로 보하되, 그 직위의 직무등

③ 주택정책관은 「국토교통부
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2조
제3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
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
다.

④ 주거복지정책관은 「국토교
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
2조제3항제21호부터 제32호까
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
좌한다.

⑤ 토지정책관은 「국토교통부
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2조
제3항제33호부터 제59호까지의
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
다.

⑥ 국토정보정책관은 「국토교
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
2조제3항제60호부터 제76호까
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
좌한다.

⑦ ~ ㉓ (현행 제3항부터 제20
항까지와 같음)

제9조(건설정책국) ① 건설정책국
장-----

급은 나등급으로 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② ~ ⑪ (생략)

제11조(교통물류실) ① (생략)

② 종합교통정책관·물류정책관 및 자동차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.

<신 설>

-----.

② 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3조제1항에 따라 건설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기술안전정책관으로 하며,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,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.

③ 기술안전정책관은 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3조제3항제21호부터 제34호까지, 제36호 및 제37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.

④ ~ ⑬ (현행 제2항부터 제11항까지와 같음)

제11조(교통물류실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통물류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종합교통정책관·물류정책관 및 자동차정책관으로 하며, -----.

③ 종합교통정책관은 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5조제3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,

<신 설>

<신 설>

③ ~ ⑭ (생 략)

제12조(항공정책실) ① (생 략)

② 항공정책관·항공안전정책관 및 공항항행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,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.

<신 설>

제15호의2, 제16호부터 제21호까지 및 제37호부터 제4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.

④ 물류정책관은 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5조제3항제22호부터 제3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.

⑤ 자동차정책관은 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5조제3항제43호부터 제5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.

⑥ ~ ⑰ (현행 제3항부터 제14항까지와 같음)

제12조(항공정책실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6조제1항에 따라 항공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항공정책관·항공안전정책관 및 공항정책관으로 하며, --
-----.

③ 항공정책관은 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6조

<신 설>

<신 설>

③ ~ ⑧ (생 략)

⑩ ~ ⑰ (생 략)

제14조(철도국) ① 철도국장 및 철도안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,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.

<신 설>

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, 제14호의2, 제14호의3, 제15호부터 제20호까지 및 제20호의2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.

④ 항공안전정책관은 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6조제3항제21호부터 제4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.

⑤ 공항정책관은 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6조제3항제47호부터 제6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.

⑥ ~ ⑪ (현행 제3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)

⑫ ~ ⑰ (현행 제10항부터 제17항까지와 같음)

제14조(철도국) ① 철도국장-----

-----.

② 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8조제1항에 따라 철

<신 설>

② ~ ④ (생 략)

⑥ ~ ⑪ (생 략)

제56조(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
의 정원) ① 국토교통부(「행정
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
칙」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
시조직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)
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
(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
관한 통칙」 제25조제1항에 따
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. 이하
같다)은 별표 7과 같다. 다만,
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

도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
철도안전정책관으로 하며, 고위
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
원으로 보하되, 그 직위의 직무
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.

③ 철도안전정책관은 「국토교
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
8조제3항제12호, 제13호, 제17
호, 제20호 및 제22호부터 제31
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
보좌한다.

④ ~ ⑥ (현행 제2항부터 제4
항까지와 같음)

⑦ ~ ⑫ (현행 제6항부터 제11
항까지와 같음)

제56조(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
의 정원) ① -----

제」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
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
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
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
정원은 별표 7의2와 같으며, 별
표 7의2의 정원 중 3명(철도경
찰사무관·행정사무관·통계사
무관·공업사무관·환경사무관
·항공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
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 또
는 방재안전사무관 2명 및 철도
경찰주사보·행정주사보·통계
주사보·공업주사보·환경주사
보·항공주사보·시설주사보·
전산주사보·방송통신주사보·
사서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
보 1명)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
용한다.

② ~ ④ (생략)

제57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
정원) ① (생략)

② 지방국토관리청에 두는 공무
원의 정원은 별표 9와 같다. 다
만, 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
관 직제」 제55조제1항 단서에
따라 별표 9에 따른 총정원의 5

7퍼센트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57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
정원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.

7

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의2와 같다.

③ 삭 제

④ 철도경찰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. 다만, 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1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의2와 같으며, 철도경찰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철도안전업무를 담당하는 2명(철도경찰주사보 2명)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⑤ 지방항공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. 다만, 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2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의2와 같으며, 지방항공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

퍼센트 _____

_____.

④

7퍼 센트

(철도경찰주사 1명 및 철도
경찰주사보 1명)

⑤ -----

중 항공보안업무를 담당하는 2명(항공주사 2명)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⑥ 삭 제

⑦ ~ ⑩ (생 략)

제58조(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) ①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4조제3항 및 「공무원임용령」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(이하 “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”이라 한다) 정원은 별표 7 제2호, 별표 7의2 제2호, 별표 9 제2호, 별표 9의2 제2호, 별표 12 제2호 및 별표 12의2 제2호와 같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.

국토교통부령 제588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

-----.

⑦ ~ ⑩ (현행과 같음)

제58조(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) ①-----

-----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7조에 따른 정원 배정 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한다.

국토교통부령 제588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

제1조 (현행과 같음)

[illegible]

신 · 구정원대비표

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7]

국토교통부 공무원 정원표(제56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• • 1 공무원(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) 계	• • 991	• • <삭 제>	-991
• • 일반직 계	• • 981	• • 983	+2
• • 행정서기보	• • 1	• • 3	+2
• • 2.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	• • 2.0	• • <삭 제>	-2.0
• • 일반직 계	• • 2.0	• • <삭 제>	-2.0
• • 행정서기보	• • 2.0	• • <삭 제>	-2.0

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7의2]

국토교통부 공무원 정원표(제56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	·	·	
·	·	·	
<u>1</u>			
<u>공무원(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) 계</u>	<u>994</u>	<u><삭 제></u>	-994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984</u>	<u>986</u>	+2
·	·	·	
·	·	·	
행정서기보	<u>1</u>	<u>3</u>	+2
·	·	·	
·	·	·	
<u>2.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</u>	<u>2.0</u>	<u><삭 제></u>	-2.0
<u>일반직 계</u>	<u>2.0</u>	<u><삭 제></u>	-2.0
<u>행정서기보</u>	<u>2.0</u>	<u><삭 제></u>	-2.0

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9]

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정원표(제57조제2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	·	·	
·	·	·	
<u>1</u>			
<u>공무원(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) 계</u>	<u>1,487</u>	<u><삭 제></u>	-1,487
일반직 계	<u>1,487</u>	<u>1,493</u>	+6
·	·	·	
·	·	·	
행정서기보	<u>40</u>	<u>43</u>	+3
·	·	·	
·	·	·	
공업서기보 또는	<u>162</u>	<u>165</u>	+3
운전서기보			
·	·	·	
·	·	·	
<u>2.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</u>	<u>6.0</u>	<u><삭 제></u>	-6.0
<u>일반직 계</u>	<u>6.0</u>	<u><삭 제></u>	-6.0
<u>행정서기보</u>	<u>3.0</u>	<u><삭 제></u>	-3.0

<u>공업서기보</u> 또는 <u>운전서기보</u>	<u>3.0</u>	<u><삭 제></u>	-3.0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	------

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9의2]

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정원표(제57조제2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	·	·	
·	·	·	
<u>1</u>			
<u>공무원(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) 계</u>	<u>1,487</u>	<u><삭 제></u>	-1,487
일반직 계	<u>1,487</u>	<u>1,493</u>	+6
·	·	·	
·	·	·	
행정서기보	<u>40</u>	<u>43</u>	+3
·	·	·	
·	·	·	
공업서기보 또는	<u>162</u>	<u>165</u>	+3
운전서기보			
·	·	·	
·	·	·	
<u>2.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</u>	<u>6.0</u>	<u><삭 제></u>	-6.0
<u>일반직 계</u>	<u>6.0</u>	<u><삭 제></u>	-6.0
<u>행정서기보</u>	<u>3.0</u>	<u><삭 제></u>	-3.0

공업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	3.0	<삭 제>	-3.0
--	-----	-------	------

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12]

지방항공청 공무원 정원표(제57조제5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	·	·	
·	·	·	
<u>1</u>			
공무원(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) 계	<u>614</u>	<u><삭 제></u>	-614
일반직 계	<u>614</u>	<u>615</u>	+1
·	·	·	
·	·	·	
행정서기보	<u>1</u>	<u>2</u>	+1
·	·	·	
·	·	·	
<u>2.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</u>	<u>1.0</u>	<u><삭 제></u>	-1.0
<u>일반직 계</u>	<u>1.0</u>	<u><삭 제></u>	-1.0
<u>행정서기보</u>	<u>1.0</u>	<u><삭 제></u>	-1.0

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12의2]

지방항공청 공무원 정원표(제57조제5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	·	·	
·	·	·	
<u>1</u>			
공무원(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) 계	<u>614</u>	<u><삭 제></u>	-614
일반직 계	<u>614</u>	<u>615</u>	+1
·	·	·	
·	·	·	
행정서기보	<u>1</u>	<u>2</u>	+1
·	·	·	
·	·	·	
<u>2.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</u>	<u>1.0</u>	<u><삭 제></u>	-1.0
<u>일반직 계</u>	<u>1.0</u>	<u><삭 제></u>	-1.0
<u>행정서기보</u>	<u>1.0</u>	<u><삭 제></u>	-1.0